

# 대구광역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허시영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6558
----------	------

발의년월일 : 2022. 11. 18.

발의의원 : 허시영,윤영애,  
박소영,이영애,  
전경원,이성오,  
김태우,이동욱  
(8명)

## 1. 제안(개정)이유

지명의 정의규정 신설, 지명 결정 주체 시·도지사 명시 등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일부개정( ' 22.06.10) 및 도시철도역 명칭에 대한 국가지명위원회의 의견 반영 등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- 가. 법령에서 규정한 지명의 정의와 국가지명위원회 의견을 반영하여 시 지명위원회 심의·의결 기능 조정(안 제2조)
- 나. 지명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등의 선임 대상자를 명확히 함(안 제3조)

## 3. 참고사항

- 가. 신·구조문 대비표(붙임1)
- 나. 관계 법령 :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(붙임2)
- 다. 예산조치 : 별도 조치 필요 없음
- 라. 기 타

대구광역시조례 제 호

## 대구광역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제3호를 삭제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위원회는 도시철도역 명칭의 제정, 변경, 폐지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.

제3조제2항 중 “행정부시장”을 “소관부서 부시장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제2호 중 “사람”을 “시의원”으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(붙임1)

##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기능) 대구광역시 지명위원회 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</p> <p>1.·2. (생략)</p> <p>3. 도로, 교량, 터널, 램프, 지하 보도, 공원, 광장 등 시설물 명칭과 도시철도역 명칭의 제정, 변경 또는 조정</p> <p>4. (생략)</p> <p>&lt;신설&gt;</p> <p>제3조(구성) ① (생략)</p> <p>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위원장이 정한다.</p> <p>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구광역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대구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</p> <p>3. (생략)</p>	<p>제2조(기능) ① ----- ----- -----.</p> <p>1.·2. (현행과 같음)</p> <p>&lt;삭제&gt;</p> <p>4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위원회는 도시철도역 명칭의 제정, 변경, 폐지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.</p> <p>제3조(구성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소관부서 부시장----- ----- -----.</p> <p>③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-----       <u>시의원</u></p> <p>3. (현행과 같음)</p>

(붙임2)

## 관 계 법 령

### □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(' 22.6.10 개정)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<개정 2012. 12. 18., 2013. 3. 23., 2013. 7. 17., 2015. 7. 24., 2020. 2. 18., 2022. 6. 10.>

1. “공간정보”란 「국가공간정보 기본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간정보를 말한다.

1의2. ~ 9. (생략)

9의2. “지명(地名)”이란 산, 하천, 호수 등과 같이 자연적으로 형성된 지형(地形)이나 교량, 터널, 교차로 등 지물(地物)·지역(地域)에 부여된 이름을 말한다.

10. ~ 34. (생략)

제91조(국가지명위원회 등의 설치) ① 지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국가지명위원회를 둔다. <개정 2013. 3. 23., 2020. 2. 18., 2022. 6. 10.>

1. 지명의 제정·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

2. 지명 관련 법령, 제도 및 정책의 개선에 관한 사항

3. 그 밖에 지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
② 관할 지역의 지명의 제정·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시·도에 시·도 지명위원회를 두고, 시·군 또는 구(자치구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에 시·군·구 지명위원회를 둔다. <개정 2022. 6. 10.>

③ 국가지명위원회, 시·도 지명위원회 및 시·군·구 지명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「형법」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. <신설 2019. 12. 10., 2022. 6. 10.>

④ 국가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, 시·도 지명위원회와 시·군·구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<개정 2019. 12. 10., 2022. 6. 10.>

제91조의2(지명의 결정) ① 시·군·구의 지명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·도 지사가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관할 시·군·구 지명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시·도 지명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결정한다. 다만, 둘 이상의 시·군·구에 걸치는 지명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·도지사가 시장·군수·구청장의 의견을 들은 후 시·도 지명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결정하고, 둘 이상의 시·도에 걸치는 지명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시·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국가지명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결정한다.

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·도지사는 대한민국의 영토의 경계와 관련된 지명의 결정에 관한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결정을 요청할 수 있다.
- ③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·도지사가 지명을 결정(제91조의3에 따라 재심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명결정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.
-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된 지명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시·도지사에게 통보하고, 시·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할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.
-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된 지명을 제91조의3에 따른 재심의 청구 기간이 도과된 후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. 다만, 같은 조에 따른 재심의 청구·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명의 결정·통보 및 고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## □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

- 제88조(지방지명위원회의 구성)** ① 법 제91조제1항에 따른 시·도 지명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, 시·군·구 지명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- ② 시·도 지명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지사(특별시,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의 경우에는 부시장을 말한다) 중 지명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되고, 위원은 관계 공무원 및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·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. <개정 2013. 6. 11., 2020. 6. 9.>
- ③ ~ ⑤ (생략)